

13. 法人稅法施行令中 改定令

(관련 주요내용 발췌)

大統領令 第14,080號, 1993. 12. 31

법인세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익금에 가산할 금액=(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1/365×금융기관의 정기에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⑤제4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도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상당액
2. 제1호의의 임대용부동산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제30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호중 “타인(사용인을 제외한다)”를 “다른 사람(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제46조의2에 규정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3호중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를 “제46조의2에 규정된 소액주주”로 한다.

다만,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

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16조제11호에서 “건설자금을 총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제124조의3제5항중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면적보다 같거나”를 면적과 같거나”로 한다.

제124조의4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3항각호”를 “제5항각호”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과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6조 제1항제1호·제30조·제38조의2·제70조 및 제1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게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9호·제25조·제35조·제36조 및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양도·지급·지출 또는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손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4조·제16조제1항제1호·제30조·제38조의2·제70조 및 제1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4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조(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의2·제124조의3·제124조의4 및 제124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채권이자소득의 원천징수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3·제100조의4 및

제10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법인격없는 단체의 사업연도 개시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단체로서 이 영 시행전에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는 1994년 1월 31일까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를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시행일부터 그 신고에 의한 사업연도개시일 전일까지를 최초의 사업연도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단체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과 관련된 공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부담으로서 1994년 3월 31일 이전에 납무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5조제1항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종전의 제3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 및 재평가

적립금과 상계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7항
을 적용한다.

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
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

□ 개정이유 □

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기외화채권 및 채무평가차손익의 세무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규
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 대하여 정기에금에 상당하는 이익이 발생한 것
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종전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입금
상환액을 공제하고 과세소득을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임대보증금에서 임대용
건물의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하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도록 하여 차입금상환여부
에 따른 과세상의 불공평을 해소하도록 함(령 제14조제4항).
- 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과금의 범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처리부담금등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함(령 제25조
제1항).
- 다.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비
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준수입금액비율에 미달하여 비업
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면 종전에는 당해 부동산의 유지관리비 금액을 손금에 산
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
한 유지관리비만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실제로 업무와 관련있는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령 제30조).

라. 중소기업과 지방에 소재하는 기업외의 기업이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비율을 현행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함(령 제43조제5항).

모이면 질서있게, 끝날땐 깨끗하게